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1. 28 선고 2023가합104729(본소), 2024가합101383(반소)

판결 [위약금 청구 등 · 공사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민, 임다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혜리

피고(반소원고)1. B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지연, 강두진, 이현지,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상명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건우, 김태현

피고2. C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지연, 강두진, 이현지,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상명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건우, 김태현

변론 종결2024. 11. 7.

판결 선고2024. 11. 28.

주 문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56,890,000원을 지급하라.
-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의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및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256,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1일당 1000분의 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3. 1. 27. 피고 C 및 'D'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서울 E건물 F동 공용복도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23. 2. 27.부터 2023. 5. 15.까지,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고,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 C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표에서 '갑'은 원고, '을'은 피고들을 의미한다).

하도급계약서

1. 공사명: F동 공용복도 개선공사
2. 현장명: E건물

3. 공사범위: 현장설명회 자료 참조

4. 착공년월일: 2023. 2. 27.

5. 준공년월일: 2023. 5. 15.

6. 공사금액: 450,000,000원(부가세 별도)

* 착공 후 하도급인의 사정으로 공사 중단 및 포기 시 계약금액의 1.5배를 배상하며 계약 후 지급한 금액은 전액 회계처리한다.

7. 대금지급조건

1) 선수금: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45,000,000원 지급(계약이행증권 20%, 선급금보증서 10% 발행-G보증보험)

2) 포세린 타일 자재비는 직불 처리한다.

3) 1차 중도금(공정 40% 기성시): 70,000,000원 지급

4) 2차 중도금(공정 70% 기성시): 70,000,000원 지급

5) 준공금: 준공검사 통과 후 지급(직불처리 금액 정산 후)

8. 하자보수: 하자보수기간은 준공 완료 후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하자보증이행증권 발급)

[계약일반조건]

제4조(시공자의 의무)

6. "을"은 일정한 장소를 택하여 시공 전과 시공 후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계 제출 시 사진첩으로 만들어 "갑"에게 제출한다.

제9조(갑의 계약의 해지 등)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4.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제11조(지체상금)

"을"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본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 "을"은 지체된 매 1일에 대하여 공사금액의

3/1000의 지체 위약금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일 경우에는

예외(발주처 인정 시)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공사기간은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공사대금의 입금)

"갑"이 정당한 사유나 통보 없이 공사대금의 입금을 미룰 경우 "을"은 "갑"에게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체상금 조건과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다.

[현장설명회(공용복도 개선공사)]

8. 공사범위

1) 공사범위: 전층 복도(홀) 내벽에 있는 벽지 제거 후 균열보수 및 포세린(크기 600x1200, 두께 10t) 타일 시공

단 1층, 2층, 50층 제외

2) 코너비드는 알루미늄으로 시공한다.

3) 벽체 균열보수 및 타일부착은 시방서에 의한다.

4) 타일 부착은 에폭시 접착제로 압착한다.

5) 준공 후 보수용 타일: 100장 추가하여 견적에 포함할 것

12. 준공서류

1) 준공계

2) 준공내역서(계약금액, 전회기성, 금회기성, 누계기성)

3) 자재 총 입고현황(설계량, 입고량)

4) 준공사진첩(공사 전, 중, 후 자재 입고사진)

5) 하자이행증권

6) 정산관련 증빙서류(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4대 보험 납입영수증 등)

7) 세금계산서

8) 폐기물 처리확인서, 사진 외

13. 주의사항

2) 감독자는 상주하여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생활지원센터와 긴밀히 소통하고 보고사항은 수시 보고해야 한다.

나. 피고들은 2023. 2. 27.경부터 2023. 6.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238,11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256,890,000원[= 계약금액 495,000,000원(450,000,000원 × 부가가치세 1.1) - 지급금액 238,110,000원1)]이다.

다. 원고는 2023. 6. 12. 피고 B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2023. 6. 15.까지 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준공기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다가 최종적으로 2023. 6. 15.경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포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착공 후 피고들의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시에는 계약금액의 1.5배를 배상하도록 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억 7,500만 원(= 계약금액 4억 5,000만 원 × 1.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이 사건 공사의 완공 여부)

1) 건물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 신축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일부 미시공된 하자 부분에 관하여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성립하고, 도급인은 위 하자 부분에 관하여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214707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 갑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져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은 2023. 5. 말경 이 사건 공사의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을 약정된 대로 시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미완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측 현장관리자 H, 피고 C 및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업체의 대표들인 I, J, K 등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방을 개설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지시사항 등을 전달하여 왔는데, 2023. 5. 29. 위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해 "물청소까지 다했으니 자재 치우고 마무리하세요", "C사장님(피고 C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 다 정리하고 최종 전층 체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23. 6. 2. "오늘 최종 검수가 끝났습니다. 지적에 대한 모든 보수는 10일까지 처리하시고, 끝나면 C사장이 센터에 검수 받아서 얘기하면 최종 준공금 신청하겠습니다", "공통지적 수선사항 1. 실리콘 보수 및 미처리된 곳 확인해서 처리, 2. 천장 쪽 실리콘 바른곳 제거하고 타일 보수, 3. 깨진 타일교체, 4. 코너비드 날카로운 곳 처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 각 메시지 내용 등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및 오시공 부분과 피고들이 시공한 타일, 코너비드 등에 불량ى 있음을 통보하고, 이에 관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주요 부분은 완공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피고 C, J, K 등이 2023. 6. 2.경부터 위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해 나눈 대화의 주된 내용은 하자보수의 이행에 관한 것으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사의 관련자들 모두 이 사건 공사의 주요 부분은 완공이 되었다고 인식하였기에 이와 같은 논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또한 J, K는 2023. 6. 22. 원고에게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10~20층, 31~39층 부분을 재하도급받아 2023. 2. 27.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시공하였고, 본인이 맡은 부분은 2023. 5. 22. 39층을 마지막으로 시공을 마쳤다',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21~30층, 40~49층 부분을

재하도급받아 2023. 3. 6.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시공하였다'는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적어도 이 사건 공사 중 10~49층에 관한 부분은 2023. 5. 26.경 완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나,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238,11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256,89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56,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1일 1000분의 3의 비율(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2조, 제11조)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2023. 5.말경 완공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대금 중 256,890,000원을 미지급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256,8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피고 B은 위 256,890,000원에 대하여 2023.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1일 1000분의 3의 비율(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2조, 제11조)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914 판결 등 참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려면 동시이행의 존재효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인데²⁾ 이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 B의 위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주미소

판사정수호

1) 198,000,000원 + 11,110,000원 + 29,000,000원(반소장 2쪽 및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쪽 참조)

2) 피고 B이 자신의 하자보수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함으로써 원고에게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피고 B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객관적 입증의 불명으로 인한 불이익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B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